

“음식물 쓰레기 50% 줄입니다”

서울특별시

우 100-744 /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3707-8153~4 / 전송 3707-8169
 이리부서 : 도로관리과 (시청제2별관 3층) 과장 : 정동진 계장 : 박갑만 담당 : 한정우

문서번호 도관58710-824

시행일자 1998. 7. 7

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

취급			시	장
보존	년			
국	장	전	결	
과	장	김	법무담당관 심사필	
계	장	박	갑만	
기안	한		정우	

제목 양화대교 통행금지및운행제한 변경 공고



1. 건안 교관58710-604('98. 6.13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특별시공고 제1997-154호에 의하여 통행금지및운행제한된 양화대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“노선버스의 정의등”이 삭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의 내용을 변경하고, 이를 도로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의 공고(안)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.

가. 통행금지 : “변경없음”

나. 운행제한

당 초	변 경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남⇒강북 방향 : 2개차로 1차로 : 일반차로 2차로 : 버스전용차로 ○ 강북⇒강남 방향 : 2개차로 1차로 : 버스전용차로 2차로 : 일반차로 ※ 일반차로는 16인승이상 승합차 및 1.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남⇒강북 방향 : 2개차로 1차로 : 일반차로 2차로 : 버스전용차로 ○ 강북⇒강남 방향 : 2개차로 1차로 : 버스전용차로 2차로 : 일반차로 ※ 일반차로는 16인승이상 승합차 및 1.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	○ 변경없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항 ⇒ 양화대교(진입램프) 노선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항 ⇒ 양화대교(진입램프) 36인승이상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	○ 일부변경

따로붙임 1. 통행금지및운행제한변경 공고(안).

2. 위치도. 끝.

서울특별시

(제2안)

수신공보담당관

제목 시보 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시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 구분 : 공고

나. 게재 건명 : 통행금지및운행제한변경

다. 게재 내용 : 따로붙임

라. 법적 근거 : 도로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

따로붙임 1. 통행금지및운행제한변경 공고(안) 2부. 끝.

도로관리과장

(제3안)

수신 서울지방경찰청장

참조 교통관리과장

제목 양화대교 통행금지및운행제한변경 통보

1. 도관58710-592('97. 4.23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 대호와 관련 서울특별시공고 제1997-154호로 통행금지및운행제한 공고한 양화대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"노선버스의 정의등"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도로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의 공고(안)과 같이 변경공고코자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1. 통행금지및운행제한변경 공고(안) 1부. 끝.

023

1
87.07
도로국장

공고
한
영

(제4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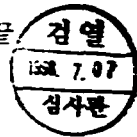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양화대교 차량통행금지및은행제한변경 공고 통보

1. 교관58710-604('98. 6.13)호와 관련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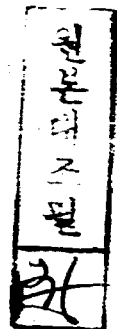
2. 위대호와 관련 은행제한 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의 변경공고(안)과 같이 시보에 게재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안내·규제표시판 설치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1. 통행금지및은행제한변경 공고(안) 1부. 끝



서울특별시

수신처 건설안전관리본부(총무부·교량관리부)장



공 고 (안)
서울특별시공고 제1998 - 호

42 제 1998-177 제 280 호
도로국 건설안전관리본부 도로국
심
간
판

통행금지및운행제한변경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7-154호로 공고된 사항 중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도로법 제53조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8년 7월 일

서울특별시장

도로의 종류	○특별시도		
노선명	○양화로		
상 행 방 향 의 차 량 의 종 류	내 용	구 간	기 간
	○ 전면 통행금지	○ 양화대교구교 ○ 양화대교 진입램프(공항=양화대교 방향 제외)	
	○ 강남=강북방향(2개차로) · 1차로 : 일반차로 · 2차로 : 버스전용차로 ○ 강북=강남방향(2개차로) · 1차로 : 버스전용차로 · 2차로 : 일반차로 ※ 일반차로는 16인승이상 승합차 동차 또는 15톤이상 화물자동 차(건설기계 포함)	○ 양화대교신교 전구간	○ 1997년5월1일부터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 완료시까지
	○ 36인승이상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 한 모든 차량	○ 공항=양화대교 진입램프(공항 / 방향 제외)	○ 1998년7월16일부터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 완료시까지
이 유	○ 양화대교성능개선공사와 양화대교신교가 일방향 4차계로에서 양방향 2개차로로 변경됨에 따른 차량운행 위험 방지		
문 의 처	○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(전화번호 3707-8153-4) ○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(전화번호 3708-2383-4)		
위 치 도	(생략) ○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·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에 도면 비치		

원본대조필